



# 미국이 말하는 '한국' 무역장벽 이해하기

무역 장벽을 알아야 관세 전쟁에서 '백전백승'

삼일PwC경영연구원 | April 2025

※ 본 자료는 4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책이 계속되어 변화되고 있는 바,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며

4월 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이며, 이는 미국과 FTA를 맺은 20여 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랜 동맹국이자 최대 무역국 중의 하나인 한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은 현재 혼란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율을 낮추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 즉시 부과하지 않고, 4월 9일 뒤늦게 90일 유예 소식을 밝힌 이유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월 2일 제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최대치이며, 보편관세 기준인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목해 온 ‘무역장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제시한 25%라는 높은 상호관세는 한국이 미국에게 부과 중인 50%라는 관세율과 더불어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기 때문에, 50%라는 미국의 오해는 실제 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무역장벽’은 미국이 어떠한 부분에서 장벽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3월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통해 미국이 느끼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NTE에서 지적된 한국의 8개의 무역장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가 점검한 무역장벽 내용을 참고해 상호관세 최소화의 실마리 찾고, 전략적 협상의 준비 태세를 높여 가길 바랍니다.

# 1. 미국 주장 ‘韓 무역 장벽’ 개요

## ▪ 4월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게 ‘25%’ 상호관세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미국 시간),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한 50여개 국가에게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
-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과 중인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을 토대로 관세 수준을 측정해, 그 절반 수준을 상대 국에 상호관세율로 제시 → 이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상이하며, 최소 10%에서 50% 사이
-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보고, 이의 절반인 25%를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제시 → 4월 9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90일 부과 유예하기로 4월 9일 발표

\*철강·알루미늄(3/12부과), 자동차(4/3부과) 등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시행했거나,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금괴, 미국에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 과세 부과 예고한 품목은 4/2 상호관세 적용 항목에서 제외

## ▪ 美 FTA 국가 중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한국의 ‘무역 장벽’ 때문

- 한국의 25% 상호관세율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20여 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호주(10%), 칠레(10%), 싱가포르(10%), 이스라엘(17%), 요르단(20%) 등  
\*다만, 이미 25% 관세 부과 발표된 캐나다, 멕시코는 4/2 상호관세 발표에는 제외되었으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합의 품목은 면제 예정
- 게다가 美 FTA 체결국이 아닌 일본(24%), 영국(10%), EU(20%)보다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높은 상황
- 이같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해온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장벽’ 때문

## ▪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한국의 무역 장벽은 무엇일까? NTE 보고서(3/31 발표) 통해 8개 무역 장벽 제시 → 해당 내용 참고해 한국이 ‘협상’ 및 ‘전략화’해야 상호관세 최소화 가능할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2 국가별 상호관세 근거 제시를 위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앞서 발표
- 397쪽의 NTE에는 59개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현황 및 이유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의 무역장벽을 크게 8개로 나누어 제시: ① 무역기술, ② 위생·검역(SPS), ③ 정부조달, ④ 지식재산권, ⑤ 서비스, ⑥ 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⑦ 투자, ⑧ 기타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관련 주요 진행 일정

날짜*	조치 내용
4/2	트럼프 대통령,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발표
4/3	모든 외국산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4/5	글로벌 대다수 국가(185개국) 10% 보편관세 부과 시행
4/9	한국 포함 50여 개국 대상,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행 예정이었으나, 90일 부과 유예하기로 발표

\* 미국 동부 시간 기준

Sources: The White House, 삼일PwC 경영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련 Talk, Talk, Talk

한국 관련 언급 내용
“한국, 일본 등이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은 최악” (4/2 연설)
“한국 수출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무역 측면에서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 (4/2 연설)
“불공정 관행으로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잃고 있으며,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 3배 이상 증가했다” (4/2 백악관 자료)

# 참고) 스무트-홀리 관세법 -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과 닮은꼴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소환

- 1929년 시작된 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도입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정식 명칭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며,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발의해 통과
-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특히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 하지만,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자마자, 캐나다·영국·독일 등 무역 상대국들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세계 무역량이 90억 달러(1929년)에서 30억 달러(1933년)로 약 3배 이상 대폭 감소
- 이와 더불어, 국가 간 보복관세가 잇따르면서 세계 무역 규모 60% 하락 → 세계 경제 침체 심화 및 대공황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4년 폐지

## ▪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세계 경제는 더 침체되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 → 이에 따라,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교훈으로 자주 인용
- 그런데,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능가한다는 전문가 의견 다수:  
→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 평균 관세율이 약 23%인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에서는 평균 관세율이 24% (사라비앙키, 에버코어 수석 전략가)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10%대였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3% 이상 증가 전망 (マイ클 페롤리, JP 모건 수석 경제학자)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균 관세율이 1910년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정 (피치 레이팅스)

## ▪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닮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 ‘미란 보고서’에서 실마리 가능

-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스티븐 미란\* 박사가 작성한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일명, 미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토대  
\* 스티븐 미란은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관세 정책 이행 중
-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강달러 해소’ →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반세기동안의 강달러 유지가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수출 감소·수입 증가로 제조업 쇠퇴를 낳아 ‘국가 부채 무한 증가’와 ‘국가 기초 산업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
- 미란 보고서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내듯이 기축통화에 있어서도 동맹국들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할인채의 형태로 미국 국채를 장기 보유하여 미국의 기축통화 유지비를 부담시키자고 주장. 그렇게 하지 않은 동맹국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하자고 강조 →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엔화·유로화 등)를 축적하여 기축 통화로 인한 달러 강세의 부작용은 완화하면서도 기축 통화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려라고 협정’ 제안
- 결론적으로, 미란 보고서는 ‘마려라고 협정’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환율, 금리, 무역 등이 모두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고관세로 수입을 억제하여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활성화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자는 계획이 핵심 골자

## 2. NTE(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개괄

- **NTE란? 美USTR이 주요 교육국들의 무역 장벽을 식별 및 평가해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
    - NTE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약자
    - 미국 USTR(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업 등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투자 장벽과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미국 주요 교육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표된 2025 NTE는 '4/2 국가별 상호관세 예고' 직전 발표(3/31) →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 자료로 여겨지며, 해당 내용 참고해 상호관세 최소화 실마리 찾을 필요**
  - **바이든 대통령 때의 NTE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이번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보다 강조되었으며, 무역장벽의 정의도 광범위해짐**
  - **2025 NTE의 한국의 전반적 평가는 FTA의 원활한 이행으로 한미 교역 상황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나, 8개의 무역장벽 해결 필요 → 무역장벽 지적사항은 '2024 NTE'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보호기술법, 원전 외국인 지분 금지 등이 새로 추가**
    - 2025 NTE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가운데,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협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양국 교역 상황이 타국과 대비 우호적이라고 평가
    - 그러나 한국의 8개 부문의 22개 영역 무역장벽\* 해소 필요성 지적 → 해당 내용은 2024 NTE에도 유사하게 지적된 내용이나, △국방 절충교역(③정부조달),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보호기술법(⑥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원전 외국인 지분 금지(⑦투자)가 새롭게 추가
- \* ①무역기술, ②위생·검역(SPS), ③정부조달, ④지적재산권, ⑤서비스, ⑥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⑦투자, ⑧기타

### 美 정권 NTE 보고서 비교: '24년 NTE(바이든 행정부) VS. '25년 NTE(트럼프 행정부)

	'24년 NTE(바이든 행정부)	'25년 NTE(트럼프 행정부)
NTE 보고서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li><li>•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 촉진</li><li>• 근로자 이익 증진에 기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li><li>•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 촉진</li><li>• 무역법 집행 및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li></ul>
NTE에서의 무역장벽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非시장 정책 및 관행 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li></ul>

Source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25년 NTE에서 지적한 한국 8개 분야 무역장벽

부문	무역장벽 영역 상세	부문	무역장벽 영역 상세
① 무역기술	(1) 화학물질, (2) 포장 재료 및 라벨링	⑤ 서비스	(12) 시청각, (13) 보험, (14) 전문 서비스
② 위생·검역 (SPS)	(3) 농업 생명공학, (4) 쇠고기, (5) 반추동물 유래 사료 시장 접근성, (6) 원예 작물, (7) 최대 잔류허용 기준	⑥ 전자상거래 · 디지털 통상	(15) 망 사용료, (16) 경쟁정책, (17) 위치 기반 데이터, (18) 데이터 현지화, (19) 산업보호기술법
③ 정부조달	(8)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기준, (9) 클라우드 보안 인증, (10) 국방 절충교역	⑦ 투자	(20) 특정 분야의 외국인 출자 금지 및 원전 외국인 지분 금지
④ 지적재산권	(11) 민·형사상 처벌 부족	⑧ 기타	(21) 자동차, (22) 의약품/의료기기

Sources: 2025 NTE, 삼일PwC경영연구원 재구성

2025 NTE에서 새로 추가된 무역 장벽

### 3. 韓 8개 무역장벽: ① 무역 기술, ② 위생·검역 (1/4)

#### ① 무역 기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화학물질’과 ‘포장 재료 및 라벨링’ 관련 한국 법률에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 1) 화학물질(Chemicals):

- ✓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4가지 주요 법률 및 시행령\*에 이행 지침 부족, 영업기밀 보호조치 미흡, 시험 대상 화학물질 선정 및 시험 방법론 투명성 부족으로 미국 화학업체 무역 장벽 존재한다고 제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 2) 포장 재료 및 라벨링(Packaging Materials and Labeling Regulations):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포장공간비율 계산 방식이 불투명
- ✓ 2020년 8월과 11월에 제안된 재활용법에는 포장재 사전 테스트 및 라벨링 의무규정 등이 포함돼 제품 출시 자연에 따른 무역 장벽 발생 가능

#### ②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 ‘농업 생명공학’, ‘쇠고기’, ‘반추동물 유래 사료 시장 접근성’, ‘원예 작물’, ‘최대 잔류허용 기준’에 미국 기업 접근 막는 무역 장벽 존재한다고 지적

##### 3) 농업 생명공학(Agricultural Biotechnology):

- ✓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중복 검토와 과도한 데이터 요청으로 비효율적
- ✓ 2024년 제출된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최종 제품에 외래 유전자를 사용하거나 포함하지는 않는 유전체 편집 파생 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역 장벽 존재

##### 4) 쇠고기(Beef and Beef Products):

- ✓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로, 한국은 미국소 수입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 ✓ 일부 소고기 가공육\* 수입 금지하고 있어 무역 장벽 존재 제기  
\* 쇠고기 패티, 쇠고기 육포, 소시지 등

##### 5) 반추동물 유래 사료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for Pet Food Containing Ruminant Ingredients):

- ✓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 부족 지적

##### 6) 원예 작물(Horticultural Products):

- ✓ 오리건주 외의 다른 주에서 수출되는 미국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자몽(텍사스산), 핵과류(캘리포니아산)에 대한 시장 접근 또는 수입확대 요청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검역본부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  
→ 언급된 원예 작물의 한국 시장 접근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7) 최대 잔류허용 기준 (Maximum Residue Limits):

- ✓ 한국의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의 수입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  
\* 2022년 1월부터, 한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한국 MRL(최대잔류기준), 수입 허용기준, 또는 0.01ppm의 기본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요구
- ✓ ‘24년부터 한국 정부는 수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설정한 MRL을 따르지 않고 한국 기준만 인정하고 있으며, MRL이 설정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 Codex MRL 및 유사 품목의 최소 MRL을 계속해서 인정 중

### 3. 韓 8개 무역장벽: ③ 정부조달, ④ 지적재산권 (2/4)

★ '25 NTE에 새로 추가되어 무역장벽으로 지적된 부분

#### ③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기준’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방 절충교역’ 부분에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 8)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기준(Encryption and Security Requirements for Public Procur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 한국과 미국은 ‘국제공통평가기준 기반의 상호인정협정(CCRA)’ 국가로 특정 국가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 검증 없이 인정 가능하나, **한국 국가정보원(NIS)은 자체 보안평가제도 (SES)를 통해 사이버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해 무역장벽 존재  
\*국제 표준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급 암호화 표준(AES) 대신 한국에서 개발된 ARIA와 SEED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 모듈만 인증. 더불어, 2025년부터 NIS는 AES 인정 뿐만 아니라 다중보안등급 보안체제(MLS)도입 예정 계획
- ✓ 국정원은 ‘3단계 인증 등급’ 체계 도입해 민감도가 낮은 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국내 보안 검증 없이 국제 인증 받은 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0% 이상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SES 제도 적용 중**

##### 9) 클라우드 보안 인증(Cloud Security Certification for Public Sector Cloud Service Procurement):

- ✓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위해 필요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을 위해 **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인프라 구축 필요, 데이터 현지화 요구,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 생성, 한국 거주 관리 인력 확보, 국정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ARIA 또는 SEED) 무조건 사용** 등의 인증 요건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10) 국방 절충 교역(Offsets in Defense Procurement)★:

- ✓ 한국이 ‘국방 절충 교역 제도(방위사업법 제20조)’를 기반으로,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 교역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  
\*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 등을 구매할 때, 판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한국산 무기 수출 등의 혜택을 요구하는 교역 방식

#### ④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지식재산 보호 등을 위한 민·형사상 처벌 부족한 측면에서 무역 장벽 존재한다고 지적

##### 11)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처벌 부족

- ✓ 한국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집행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미 FTA 통해 다양한 유형의 IP 관련 집행 조항에 동의하고 주요 다자간 IP 협정 가입을 약속했다고 평가
- ✓ 그러나, **(특히, 소형 소포를 통한) 위조품의 환적, 지리적 표시, IP 위반 사항 억제를 위한 민사 및 형사 처벌 등의 불충분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

### 3. 韓 8개 무역장벽: ⑤ 서비스, ⑥ 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3/4)

★ '25 NTE에 새로 추가되어 무역장벽으로 지적된 부분

#### ⑤ 서비스 (Services Barriers)

- ‘시청각’과 ‘보험’, ‘전문 서비스’ 부분에서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 12) 시청각 (Audiovisual Services):

- ✓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제한 가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현지 콘텐츠 쿼터제 등 전통 미디어에 적용되는 규제가 OTT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기

##### 13) 보험(Insurance Services):

- ✓ 재보험사들은 한미 FTA따라, 재보험 업무에 필요한 보험가입자 정보를 국경 간에 전송할 수 없다고 제한
- ✓ 그러나, 韓 금융위원회는 ‘미국 재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위험 관리 및 인수 심사 목적으로 이관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변경 ('22년 및 '24년) → 하지만, 공식적 문서화가 없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해 보험 계약자 개인정보를 한국 밖으로 전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재보험사가 지적

##### 14)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 ✓ 한미 FTA에 따라, ‘13년부터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조치 시행 → 이에 따라, ‘17년부터 외국 면허 변호사와 로펌 합작사를 설립하고 한국 면허 변호사 고용이 가능
- ✓ 하지만, 한국은 외국 로펌의 합작 투자 소유지분 49%로 제한, 3년 이상 본국에서 운영 경험 있는 해외 로펌만 한국에서 합작 투자 참여 가능, 합작 투자 참여하는 외국-한국 합작법인 한국법에 따라 새로운 별도 법인 설립 의무, 업무 범위 제한 등 합작 법인 형태를 통한 법률 시장 진입 한계 지적

#### ⑥ 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Electronic Commerce · Digital Trade Barriers)

- ‘망 사용료’, ‘경쟁정책’, ‘위치 기반 데이터’, ‘데이터 현지화’, ‘산업보호기술법’ 등에서 무역 장벽 존재한다고 지적

##### 15) 망 사용료 (Network Usage Fees)

- ✓ ‘21년 이후,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사용료법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그러나,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제공업체로 기능하기에, 미국 기업의 망 사용료 지불은 한국 ISP에게 그 자체의 혜택이기에 무역장벽이라고 지적

##### 16)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 ✓ ‘24년, 韩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 검토 → 해당 규제 방안에는 한국 기업 2개사 및 미국 기업이 포함되었으나, 다수 한국 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돼 경쟁력 손실에 따른 우려 존재

##### 17) 위치 기반 데이터 (Location-Based Data):

- ✓ 한국의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으로, 해외 기업의 지도 서비스 경쟁력 약화 지적  
\* 교통 정보, 네비게이션 등의 데이터

##### 18) 데이터 현지화 (Data Localization):

- ✓ ‘24년 3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한국 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이 무역 장벽 높인다고 지적

##### 19) 산업보호기술법 (National Core Technology Barriers to Using U.S. CSPs)★:

- ✓ 한국의 산업보호기술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불허되고 있어 무역장벽 존재  
\*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 3. 韓 8개 무역장벽: ⑦ 투자, ⑧ 기타 (4/4)

★ '25 NTE에 새로 추가되어 무역장벽으로 지적된 부분

#### ⑦ 투자 (Investment Barriers)

- 통신 및 방송 미디어를 비롯해 비원자력 발전, 육류 도매업, 간행물 발간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으며, 2025 NTE에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장벽 첫 언급

##### 20) 특정 분야의 외국인 출자금지 및 외국인 지분 제한:

-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금지, 뉴스 통신사 외국인 소유권 제한(25%),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 외국 케이블 및 위성 재전송 채널의 채널 수 제한(전체 채널의 20%)
- ✓ 재생에너지 및 비원자력 발전 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30%)
- ✓ 육류 도매업, 송전 및 배전, 간행물 발간 등(50%)과 관련한 투자 제한
- ✓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

#### ⑧ 기타 (Other Barriers)

-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 21) 자동차 (Motor Vehicles)

- ✓ 2025 NTE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 확대가 여전히 미국 무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언급
- ✓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의 불명확성 및 수입 차량의 규정 위반에 대한 세관 당국의 형사 기소 규정 등이 한국 시장 접근을 막는 무역 장벽이라고 지적

##### 22) 의약품/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 ✓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가격 책정, 급여 정책 및 혁신 의약품 기업 인증 제도 관련 불투명성이 무역 장벽을 높인다고 지적

## 4. 맷음말

-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상호관세를 전략적 협상 수단\*으로 삼아 ‘미국이 생각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제거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 경제 질서 유지비용(또는, 안보비용)을 세계 각국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3페이지, ‘미란 보고서’ 참조)  
\* 4월 9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125%(4/9 발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앞서 설명한 NTE 보고서는 이 중 ‘미국이 생각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므로 이 보고서가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임
- 2025 NTE에는 새롭게 추가된 목록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목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한국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  
\* 예) 미국 소고기 30개월 미만으로 윌링 제한 등

→ 따라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국내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비용 분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고용창출 효과와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등 포괄적 전략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

### 삼일PwC 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관련 시리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24.11\)’ 참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진행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25.03\)’ 참조](#)

[트럼프 대통령 4/2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은 ‘美, 관세전쟁을 선포하다: 궁금증 10문 10답\(‘25.04\)’ 참조](#)

##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 Business Contacts

### 삼일PwC Global Trade Solution Center

#### GTSC 센터장

##### 강명수 센터장

2287-1800

myung-soo.kang@pwc.com

#### 통상

##### 소주현 Partner

709-8248

so.juhyun@pwc.com

#### 국제조세총괄

##### 전원엽 Partner

3781-2599

won-yeob.chon@pwc.com

#### 해외진출자문

##### 정민우 Partner

3781-9816

min-woo.jung@pwc.com

#### 무역구제(반덤핑)

##### 한종엽 Partner

3781-9598

jongyup.han@pwc.com

#### 무역구제(반덤핑)

##### 김중현 Partner

3781-2338

joong-hyun.kim@pwc.com

#### 무역구제(반덤핑)

##### 이승욱 Partner

709-7012

seung-wook.lee@pwc.com

#### 해외세제

##### 박광진 Partner

709-8829

kwang-jin.park@pwc.com

#### 이전가격

##### 박준환 Partner

709-8991

jun-hwan.park@pwc.com

#### 해외M&A

##### 허제현 Partner

3781-9440

je-heon.heo@pwc.com

#### 공급망시스템

##### 최준걸 Partner

3781-9803

jun-kirl.choi@pwc.com

#### 관세

##### 이영모 Partner

3781-3140

youngmo.lee@pwc.com

#### 수출통제

##### 김현준 Director

3781-9161

hyun-jun\_1.kim@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4W-RP-048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